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기한연장 승인처리

메르스 피해자의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기한 연장 신청서가 2015년 6월 24일 접수(번호:21343)되어 다음과 같이 승인 처리 하고자 합니다.

가. 납세의무자 : *****

나. 주 소 : *****

다. 신청사유 : 메르스환자 치료로 인한 자가격리 및 병원휴업으로 영업부진

라. 신청세액 : 금6,057,690원(육백오만칠천육백구십원)

마. 연장 신청기간 : 2015. 7. 1. ~ 9. 30.(3개월)

바. 관계법령 등 :

- 1) 지방세기본법 제26조 【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】 제1항
 - 천재지변, 사변, 화재 등의 경우

- 2)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-1727(2015.6.11)및 서울시 세무과-13426(2015.6.15)
 -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통보

사. 검토의견 :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기한연장 승인

- 붙임
1. 기한연장 신청서 및 자가격리통지서 등 1부.
 2. 휴업사실증명서***** 사본 1부.
 3. 메르스 피해자 명단 ***** 1부. 끝.

